



제420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축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근거 마련 등〉

■ 김대식의원,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56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김준혁 의원 등 28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그리고 뉴노멀 사회 도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격변에 따라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강화되는 상황임.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교육 환경을 규율하고,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 그러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교육의 질 향상,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력 촉진 및 평생교육 진흥, 지역(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협력 등으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두어 통합한 대학들과 소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여 대학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지역의 성장 동력 기제로 작동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마. 학교는 학생을 위한 장학·복지·진로·취업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자체는 학교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안 제14조).
- 바.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

함(안 제33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8조제7항).

사.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하여, 대학과 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단, 학교협의체가 부재하거나 협의체 근거규정이 없는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학교협의체 조율사항을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2조).

아.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학위 등을 수여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제54조).

자.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함(안 제50조).

차. 국립대-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지원함(안 제58조).

카.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5조).

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

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함(안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과. 대학원 간 칸막이를 없애 양질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종류’를 삭제하고 각 학교가 학칙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적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 축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근거 마련, 대학 통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고등교육법 전반을 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교육법」이 가지는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8년 3월 1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제정되었음. 이후 26년간 약 50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학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구성

개정안은 본칙 85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됨.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본칙(8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7조(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2조(정의)	제8조(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제3조(학교의 역할)	제9조(평가 등)
제4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10조(교육통계조사 등)
제5조(통합국립대학의 운영)	제11조(학교협의체)
제6조(지도·감독)	제12조(대학규제개혁협의회)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3조(학생자치활동)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학생에 대한 지원)	제17조(학생의 징계)
제15조(학업·가정의 양립 지원)	
제2절 교직원	
제18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강사)
제19조(교직원의 임무)	제22조(겸임교원 등)
제20조(교원·박사후연구원·조교의 자격 기준 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1관 학교의 조직 등	
제23조(학교의 설립 등)	제28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4조(분교)	제2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25조(학교의 명칭)	제30조(인권센터)
제26조(학교의 조직)	제31조(연구시설 등)
제27조(학교규칙)	
제2관 입학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7조(입학사정관 등)
제33조(입학자격)	제38조(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9조(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5조(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40조(입학허가의 취소)
제36조(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1조(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제3관 학사운영	
제42조(학사의 운영)	제47조(수업연한)
제43조(학년도 등)	제48조(학위의 수여)
제44조(휴학)	제49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45조(편입학)	제50조(시간제 등록)
제46조(학위과정의 통합)	
제2절 대학 등	
제1관 대학	
제51조(목적)	제53조(대학원대학)
제52조(대학원)	제54조(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학위과정 운영)
제2관 산업대학	
제55조(목적)	제56조(산업체 위탁교육)
제3관 교육대학 등	
제57조(목적)	제60조(부설학교)
제58조(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등)	제61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59조(목표)	
제4관 전문대학	
제62조(목적)	제65조(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제6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제66조(편입학)
제64조(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 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67조(유치원 부설)
제5관 원격대학	
제68조(목적)	제69조(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학위수여)
제6관 기술대학	
제70조(목적)	제71조(입학자격)
제7관 각종학교	
제72조(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7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7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74조(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제78조(규제특례)
제7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9조(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제7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8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83조(청문)
제8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84조(벌칙)
제82조(학교 등의 폐쇄)	제8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부칙(5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개정안	현행		개정안
학교의 역할 확대	-	⇒	교육의 질 향상, 대학 주도의 산학협력 촉진 및 평생교육 진흥, 지역협력 등으로 <u>학교의 역할을 확대</u> 함(안 제3조).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	⇒	국립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u>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두도록 함</u> (안 제5조).
지도·감독 권한 축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제5조)	⇒	<u>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u>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u>축소함</u> (안 제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규제개혁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	⇒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개선과 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u>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u> 함(안 제12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직원을 교원, 직원 및 조교로만 분류하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규정 미비(제18조)	⇒	<u>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u> 하고, 그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대학원의 종류 규정 삭제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제29조의2)	⇒	<u>‘대학원의 종류’를 삭제</u> 하고 각 학교가 학칙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도록 함.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의 근거 마련	-	⇒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u>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u> 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8조제7항).
학사운영 규정 통합 및 자율화	각 대학종류 별로 학사운영을 개별적으로 규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5)	⇒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등)외에는 <u>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에서 조율</u> 하여, 대학과 협의체가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
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학사학위 수여 규정	-	⇒	<u>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학위 등을 수여</u>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제54조).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 확대	대학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간제 등록이 가능(제36조)	⇒	<u>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u> 함(안 제50조).
종합교원양성대학 통합 근거 마련	-	⇒	<u>국립대-교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지원근거를 마련</u> 함(안 제58조).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규제 완화	전공심화 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요건 및 절차 규정(제50조의2, 제50조의4)	⇒	<u>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u> 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5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그 추진체계의 근거 마련	-	⇒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u>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u> 함 (안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이하에서는 현행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함.

2. 학교의 역할(안 제3조)

개정안은 학교의 역할로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의 촉진 및 성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학교의 역할) ① 학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의 촉진 및 성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을뿐,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다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학교의 역할에 대해 규정¹⁾하고는 있으나, 유

1)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

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교가 가지는 역할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대학교만의 고유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규정에서의 학교는 제2조 각 호의 학교로서 이른바 대학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제4조에서 정의하는바, 명확한 정의를 위해 제3조에서 학교를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정의²⁾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지자체를 포함한 외부기관이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산학연협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시함.

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수정의견) 제3조(학교의 역할) ①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의 촉진 및 성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3. 대학 통합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제48조제3항, 제54조, 제58조 제3항)

개정안은 국립대학,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 시에 학위 수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이 통합 시에 그 대학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조(통합국립대학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립대학이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연구 및 지식학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국립대학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국립대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학위의 수여) ③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은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외에 제2항,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4조(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학위과정 운영)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48조제2항,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 제56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8조(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등) ③ 교육대학이 사범

대학이 있는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경우 그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대학 간 통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대학 통합 관련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대학의 통·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폐합을 할 수 있다.

1. 대학 간의 통·폐합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전과 통·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통·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 통·폐합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 그 밖에 대학의 통·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대학과 전문대 통합 시, 통합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거나, 국립대와 교육대학이 통합 시 교육대학이 단과대로 단순 편입됨에 따라 교육대학이 축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통합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통합국립대학위원회는 현재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으로

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구체화하여 동 규정이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원대학교 교수회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나, 만약 위원회에 지자체장, 산업계 대표 등이 포함된다면, 동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거버넌스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바, 이를 자문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입장임.

목포과학대학교, 연암대학교는 사립학교가 고등교육기관 중 다수임을 감안했을 때,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사립대학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심의사항에 대학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고, 교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국립대학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할 것을 제시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거제대학교 등 28개 대학³⁾은 , 안 제48

3) 거제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세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조제3항과 관련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통합대학에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임.

김포대학교는 전공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학점인정기관으로 고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발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바, 전문학사학위의 수여범위에서 전공대학을 제외함을 명시할 것을 제시함.

한국전공대학협의회, 백석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을 개정하여 전공대학이 대학과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통·폐합의 유형을 확대한바, 안 제48조제3항의 전문대학에 전공대학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남도립남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는 전문학사에 대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 안 제48조제3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북보건대학교, 재능대학교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의 50%만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 및 학사과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시함.

4.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축소(안 제6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발생 및 재난 대응 등과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도·감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발생 및 재난 대응 등과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해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도·감독권을 축소하는 것임.

< 고등교육법 개정 조문(안) >

기존	개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u>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u> 가 있는 경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위기에 빠진 현 상황에서 대학에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이 변화와 혁신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임. 이를 위해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권 축소 외에도 학사운영 방식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도 꾀하고 있음.

다만,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령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도·감독의 신중함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을 단서로 달거나, 지도·감독의 사유가 아닌,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화⁴⁾⁵⁾하고 있음.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홍보 방식, 영남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교비 오남용 의혹 등 사학비리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의 성비위 문제의 경우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0,084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⁶⁾되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철도차량·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6) 청원번호 제2200056호,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 김재형외50,084인

었음.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학비리에 대한 대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도·감독에 대한 제한사유를 다른 법령과 같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시키거나, 혹은 사유를 제한하는 대신 지도·감독의 대상 업무를 명시하여 그 외의 분야에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됨이 바람직하며, 사학비리, 총장의 성비위 문제 등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제8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관계법령을 통해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5. 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유에 안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역할 수행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에 앞서 미리 관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

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제2항7)을 삭제하고 있음. 이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공개사항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⁸⁾, 「사립학교법」⁹⁾ 등 관련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과 결산의 공개에 대한 교육부령이 부재한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서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7)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0) 제7조 ③학교는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에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과 지역대학 간 전략적 연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2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는 총 1,176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17조 165억원을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2022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현황>

부처명	대학 재정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비율
교육부	106	11조 4,532억원	6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3조 3,470억원	19.7%
산업통상자원부	120	5,706억원	3.4%
고용노동부	12	4,769억원	2.8%
문화체육관광부	84	1,502억원	0.9%
보건복지부	86	1,464억원	0.9%
농림축산식품부	74	1,378억원	0.8%
기타	494	7,344억원	4.2%
계	1,176	17조 165억원	100%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권 존중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학교(협의체)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 변경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협의체)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며,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립은 재량규정으로 할 것을 제시함.

6. 대학규제개혁협의회(안 제12조)

개정안은 학교에 적용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의 혁신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2조(대학규제개혁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적용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의 혁신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생,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고등교육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현장을 반영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주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외에도 규제특례(안 제78조, 제79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특례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아닌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규제특례에 대해 관여하는 사항은 법 규정상으로 존재하지 않음.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등은 전체 규제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특례에 대한 부분은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같이 다루거나, 혹은 지원위원회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거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는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하며,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바, 법령등에 규정되는 규제 외에 정책적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학사의 운영(안 제42조)

개정안은 학사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동교육과정 등 학사운영공통기준은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하

며, 학교협의체가 없는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이를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42조(학사의 운영) ①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 밖 수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에 대한 사항,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학점의 인정, 학사 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정한다. 단, 이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학사운영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포지티브(Positive)적 학사운영 규제 방식¹¹⁾에서 네거티브(Negative)적 방식¹²⁾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공동교육과정 운영,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학점의 인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사항은 대학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바, 안 제11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경우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수가 매우 적은바¹³⁾, 학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임.

11)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방식

12)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13) 기술대학의 경우 정석대학 1개교, 각종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2개교가 존재함.

다만, 원격대학의 경우 그 수가 20개 이상으로 충분히 많으며, 학교협의회체로 지정받지는 않았으나,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2개 사이버대학을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로 격상시켜 협의회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2개 발의¹⁴⁾되어 있는바, 원격대학도 공통기준을 학교협의회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타 대학의 학사 운영 기준이 상이하므로, '학교협의회'가 학사운영공통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될 경우, 학사운영공통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라야하거나 11조에 따른 학교협회의 결정사항이 학칙을 상위하는 법령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학교협의회를 학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사전인가 폐지(안 제63조, 제65조)

개정안은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사전인가 등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의 장은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제63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

14) 의안번호 제2202779호,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19호,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법안(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은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학의 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①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교육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학위수여) 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학의 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됨.

현행법은 두 과정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들을 폐지함으로써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현재 ‘전공심화과정’ 명칭에 대해 사회적으로 학사학위라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혼란 및 해당 과정 졸업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명칭을 전공심화과정에서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구보건대학교는 기존 심사를 거쳐 설치한 대학과의 형평성에 맞는 시설, 조건, 환경 등 교육의 질 확보 사항 등 허가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동일 학제 교육기관으로써 차별없이 전문기술석사과정도 설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7.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안 제73조부터 제79조)

개정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추진에 대응하여 RISE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내 RISE 거버넌스구축, 범부처 연계 등을 위한 중앙단위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전국 지자체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신속한 대학 규제특례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7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① 제73조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

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73조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7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73조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3조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78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73조에 따른 지원과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7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법무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학지원체계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75조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및 학생, 교직원 등의 편익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9조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①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8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RISE의 도입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RIS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임.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주도로 대학지원 사업이 추진되던 기존에 비하여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요를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적기에 대학이 원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ISE 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임.

< RISE를 위한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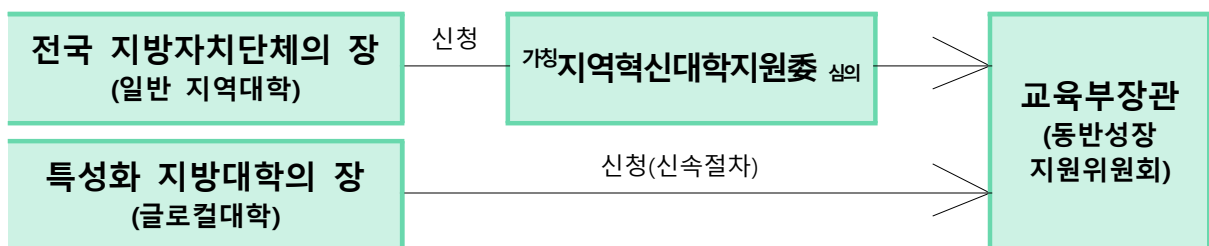
- RISE 계획 실행
- 범부처 재정지원사업 연계

-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시도 성과관리 등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종래의 규제특례는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수립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내에 포함된 특례만 가능해 계획에 얹매어 대학이 원하는 특례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규제특례 신청 이후 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여 시의성이 요구되는 규제특례가 신속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개정안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되나, 이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특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특례가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 RISE 및 글로벌대학 규제특례 운영 구조도(안) >



문 의 처
02)6788-5188